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참 조
제 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관련 안내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 예정이오니, 회원사께서는 불법대여 등의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자진신고 기간 : '26. 11. 16 ~ 11. 30
- 일제단속 기간 : '26. 12. 1 ~ '27. 1. 31

○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내용
- 대상 : 국가기술자격의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붙임1)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052-714-8655 / 이메일 주소: hrdq1@hrdkoera.or.kr)

※ 현재 관계부처의 일제단속 세부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별도 내용 확인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진신고서(양식) 1부.
2. 불법대여 예방 포스터 1부.
3. 불법대여 자진신고 포스터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제반 법령 현황 1부. 끝.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s://ulsan.kosca.or.kr) ⇒ 시·도소식 ⇒ 공문/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 장 조 현 철

담당자 주임 박성민 부장 이무열 사무처장 정은숙
시행 전건협 울산 제657호 (2026. 11. 23)
우44726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56(달동, 전문건설회관 4층) / http://www.ulsan.kosca.or.kr
전화 052-256-8900 전송 052-256-8904 / 전자우편 psm0716@kosca.or.kr